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82

발의년월일 : 2009. 3.
발의자: 박문태의원외 5인

1. 개정이유

○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(법제처)에 따라 용어 정비와 의정옴부즈만 구성원을 법률전문가, 회계전문가, 건축설계전문가, 사회복지전문가 등을 확대 영입하여 의정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옴부즈만 구성인원 변경(안 제5조)

• 11인 이하 ⇒ 15명 이하

○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(안 제4조, 제9조)

3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 (구성) 옴부즈만은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원별 1명과 직능별 대표(법률전문가, 회계전문가, 건축설계전문가, 사회복지전문가 등) 4명 이하로 구성한다.

제9조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활동 제한)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한한다. 1~4(생략)	제4조 (활동 제한) 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-----. 1~4(현행과 같음)
제5조 (구성) 옴부즈만은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선거구별 3인과 직능별 대표 (법률전문가, 회계전문가, 건축설계전문가 등 2인 이하로 구성한다.	제5조 (구성) 옴부즈만은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원별 1명과 직능별 대표 (법률전문가, 회계전문가, 건축설계전문가 , 사회복지전문가 등) 4명 이하로 구성한다.
제9조 (해촉)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옴부즈만을 해촉하여야 한다. 1~4(생략)	제9조 (해촉) --------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. 1~4(현행과 같음)

의안심사보고서
(의안번호 682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09. 3. 3

나. 제 출 자 : 박문태 의원외 5명

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3. 5

라. 위원회 상정 : 2009. 3. 12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문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(법제처)에 따라 용어정비와 의정옴부즈만 구성원을 법률전문가, 회계전문가, 건축설계전문가, 사회복지전문가 등을 확대 영입하여 의정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옴부즈만 구성인원 변경(안 제5조)

▷ 11인 이하 ⇒ 15명이하

○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(안 제4조, 제9조)

4. 검토보고 요지 : 의정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